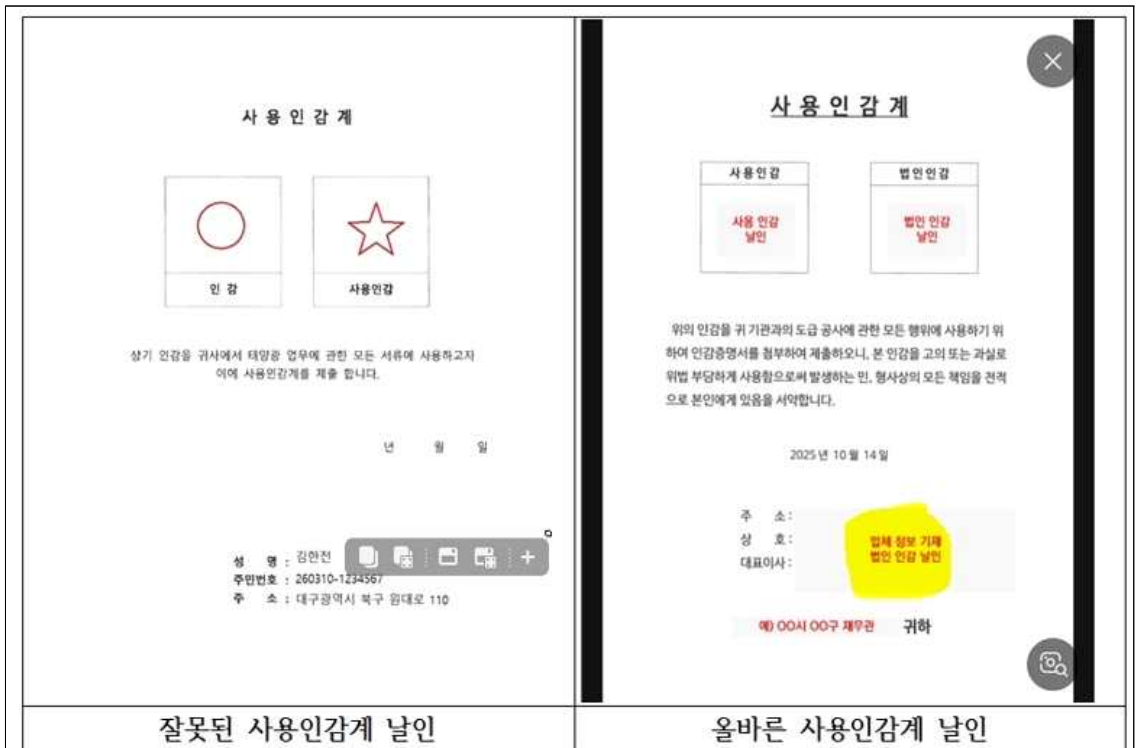


1. PPA 업무단계별 구비서류 안내 ('26.04.01 작성)

- ① 사업용/자가용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붙임5-1, 5-2 '26.04.01 개정 최신양식 사용)
 - 구 양식으로도 접수 가능하나, 접수 후 최신양식으로 보완 필요
 - 여러 PPA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순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PPA 신청서 우측 상단에 접수희망순서 기재 필요
 - 신청PPA 관할지사가 아닌 곳으로 신청서 송부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 ② 발전사업허가증(자가용PPA : 불필요)
- ③ 사업자등록증(계약단계에서 보완 가능)
- ④ 내선설계도면(단선결선도)
 - PPA신청서상 설비용량과 도면상 (모듈)설비용량 미일치 시 신규 접수 보류
 - AC 전원을 공급받는 센트럴타입 인버터 사용 시, 독립전원공급 여부 표시 필요
- ⑤ 인버터 성능별 시험성적서(상세사항 해당 안내문 2면 참조)
 - KS 미인증 제품의 경우, 해당제품의 시험성적서나 모델별 3개월 이내의 간이시험성적서(인버터 제작사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모듈, 접속함 시험성적서 및 KS 인증서 제출 불필요**
 - 접수시점에 사용 인버터 미정 시 병렬운전조작합의 전까지 제출
- ⑥ 개발행위허가서(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 : 개발행위허가장소와 발전사업허가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 ⑦ 전기사용신청서(붙임4 '25.11.01 개정 최신양식 사용, 기존 수전전력을 사용하는 자가용PPA : 불필요)
 - 발전설비 설치장소의 건물(토지) 소유주 날인 필수 / 건물(토지) 사용승낙서로 대체 불가(제출 불필요)
 - 집합건물에 태양광사업 계획 중인 경우,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한전에 필요서류 별도 문의 요망
- ⑧ PPA 신청자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의 토지(건물) 소유주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에 날인한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아래 사용인감계 작성요령 참조**

접수 단계



사용인감계상 '한국전력공사 귀하' 표시 및 대표이사 옆에 법인인감 추가 날인 필요

- 개인의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에 인감 날인했다더라도, 인감증명서로 대체 불가

⑨ 전력거래소 회원탈퇴 또는 발전기 말소 확인서(배전용 → PPA 전환 시)

- ⑩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자 증빙서류(접수증 등, '25.06.01 전 발전사업허가분 : 불필요)
 - PPA 계약단위 변경 기준(첨부2 참조)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제출
 - 발전사업허가증상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변경 접수 (설비용량 변경 등)	① 사업용/자가용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붙임5-1, 5-2 최신양식 사용) - 변경내역 기재(설비용량, 허가용량, 공급방식, 전기공사업체 등) ② 내선설계도면(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 PPA신청서상 설비용량과 도면상 (모듈)설비용량 미일치 시 변경 접수 보류 ③ 인버터 성능별 시험성적서(사용 인버터가 변경된 경우)
사용전검사 전	① 사용전검사를 위한 시험가압 요청서(붙임3 사용하여 관할지사 한전 전력공급부 제출) ② 인버터 성능별 시험성적서(상세사항 해당 안내문 2면 참조) - 신규 접수 시 제출한 인버터 시험성적서와 상이한 모델을 설치할 경우
사용전검사 후	① 사용전검사필증(실시확인서) - 필증상 설비용량이 접수 설비용량과 상이한 경우, 변경 접수서류 추가 제출 ② 인버터 현장설정 확인서(계통연계 유지기능 or 역률제어 기능)(붙임9 혹은 붙임 10 사용) -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하여 사용전검사시 인버터 현장설정 후 사진 촬영 및 작성 필수 - 사용전검사를 위한 시험가압 시 인버터 현장설정이 안 될 경우, 재가압 후 설정해야하므로 상업운전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전은 책임지지 않음. - 기본적으로는 '붙임9' 양식을 사용하되, 출력제어 대상이 아니면서 사전에 한전으로부터 '전압 제어 필요' 통보를 받은 발전소의 경우 '붙임10' 양식을 사용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을 제출을 희망하지 않거나, 별도 기재가 어려운 경우 「인버터 현장설정확인서(붙임9 혹은 붙임10)」에 안전관리자 연락처 기재 요망 ③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 사용전검사필증(실시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단, 전기안전관리자 연락처 확인(제출)은 필수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을 제출하거나, 인버터 현장설정확인서에 안전관리자 연락처 기재 요망 ④ 역송용 계기시험성적서(특고압연계 PPA에 한함) - '26.04.01 이후 접수된 특고압연계 PPA의 경우 한전 소유 양방향계기로 역송량 계량할 경우 제출 불필요 / 단,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26.06.30 접수분까지는 고객소유 역방향계기 사용 가능 ⑤ 역률제어 인버터 설치에 관한 고객 동의서(저압) (붙임13) - 한전으로부터 기술검토 결과 '전압제어 필요' 통보를 받았으나 ㉠ 당시 제출하지 않았거나, ㉡ 제출 시 기재하였던 인버터 모델과 최종 사용 인버터 모델이 변경된 경우
계약 단계	① 계좌이체거래약정서(붙임11 사용) ②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 ※ 사용인감 사용 시 본 안내문 1p 작성요령 참조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용인감계 사용 시 대표자 성명 등이 날인된 막도장은 인정하지 않음(법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인영 사용 준수 요망) ③ 사업자등록증 ④ 발전설비 특성자료(모듈설비용량 90kW 초과 태양광 발전사업용·자가용 PPA) ※ 특성자료 설비용량 : 사용전검사필증용량 / 계약전력 : 검사필증용량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값

※ 관련 규정 변경 시에는 변경 규정을 따르며, 기술검토결과 및 계약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PPA 접수유형별 인버터 사용 안내 (’26.04.01 작성)

<p>공통사항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통연계 유지기능(FRT) 시험성적서(붙임6-1, 6-2, 14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행 일 : '22.09.28 접수분부터 ○ 사용대상 : PPA 및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사업용/자가용 모두 적용) ○ 시험규격 : KS C 8564 : 2021 / KS C 8565 : 2021 KS C 8565 : 2023 / KS C 8565 : 2024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 시험항목 : ㉠ 출력 과전압 및 부족 전압 보호기능 시험 ㉡ 단독운전 방지시험 ㉢ 주파수 상승 및 저하 보호기능 시험 □ 인버터 제조사 사정상 해당 모델의 계통연계 유지기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모델의 계통연계 유지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인버터 제조사 공문 제출(붙임6-2, 14 참고)
<p>(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or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접속대상 (설비용량, 계약유형 등 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력제어기능 시험성적서(붙임7-1 ~ 7-2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행 일 : '23.10.01 ~ '24.12.31 접수분 : 개별 설비용량 100kW 이상 '25.01.01 이후 접수분 : 개별 설비용량 90kW 이상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 : 동일발전구역에서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90kW 이상인 경우 ○ 사용대상 : PPA 및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사업용 및 자가용*) * 자가용 : '25.05.30 이후 설비용량 90kW 이상 접수분 ○ 시험규격 : KSGA-025-9-3 : 2021 혹은 신재생 연계 단말장치 기반 인버터 출력제어 시험 기준 절차서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 시험항목 : ㉠ HMI 제공여부 ㉡ 통신 인터페이스 시험 ㉢ 역률제어 ㉣ 유효전력 출력제어 ㉤ 인버터 정지/기동 제어 □ 해당 모델의 출력제어기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모델의 출력제어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공문 제출
<p>(합산) 설비용량 90kW 미만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or 전압제어 대상 (설비용량, 계약유형 등 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전압제어기능(역률제어기능) 시험성적서(붙임8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행 일 : '24.01.01 ~ '24.12.31 접수분 : 개별 설비용량 100kW 미만 '25.01.01 이후 접수분 : 개별 설비용량 90kW 미만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 : 동일발전구역에서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90kW 미만인 경우 ○ 사용대상 : PPA 및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사업용에 한함) ○ 시험규격 : 역률제어 인버터 시험 기준 절차서 혹은 능동전압제어 시험기준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 시험항목 : ㉠ HMI 제공여부 ㉡ 역률/무효전력 제어기능시험 ㉢ 전압제어 기능시험 □ 해당 모델의 능동전압제어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모델의 능동전압제어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공문 제출 □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능동전압제어기능 시험성적서 제출 불필요

※ 적용 접수유형 : 신설, 증설, 공급전압변경, 수급지점변경, 해지후재사용 등(붙임1 참조)

3. PPA 기본 접수서류 자가 Check-list ('26.04.01 작성, 시공업체 활용분)



첨부순서	서류명	주요 체크사항	구비 여부 체크! (이상 없으면 0)
01	PPA 신청서	·최신양식 사용여부 ·계약유형에 따라 적정양식 활용여부 (사업용 or 자가용, 자가용인 경우 수전 계약명목과 PPA신청자 명의 일치여부) ·내용 누락·오기재 여부 ·날인 누락 여부	
02	발전사업허가증	·사업허가기간 만료 여부 * 사업용PPA인 경우 제출	
03	개발행위허가서(증)	·기간만료 여부 ·개발행위허가 주소가 발전사업허가 주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제출	
04	내선설계도면	·PPA 신청서상 설비용량과 도면 설비용량 동일 여부	
05	인버터 시험성적서 (계통연계 유지기능)	·시험규격 및 내용 적합여부 * 병렬운전조작합의 전까지 보완 가능	
06	인버터 시험성적서 (출력제어 기능)	·시험규격 및 내용 적합여부 *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대상인 경우 제출 * 병렬운전조작합의 전까지 보완 가능	
07	인버터 시험성적서 (역률제어 기능)	·시험규격 및 내용 적합여부 *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비대상인 경우 제출 (자가용은 기술검토에 따라 제출) * 병렬운전조작합의 전까지 보완 가능	
08	전기사용신청서	·최신양식 사용여부 ·내용 누락·오기재 여부 * 특히 전기사용자(=발전사업자) 및 건물(토지)소유주 인적사항 ·날인 누락 여부	
09	발전사업자 및 건물(토지)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발전사업자 혹은 건물(토지)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	
10	발전사업자 및 건물(토지) 소유주 법인인감증명서	·발전사업자 혹은 건물(토지)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11	사업자등록증	·PPA 신청자와 동일여부 * (개인) PPA 계약 전까지 보완 가능 * (법인) 접수 시 제출 요망	

※ PPA 신규접수 서류 중 약 80%가 구비서류 미비, 기재사항 오기재·누락 등으로 보완요청 중입니다. (대구 직할 기준) 적정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주시면 상호간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오니, 서류 제출 전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